



프랑스 노동·고용·구매력 촉진법 (Loi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

I. 제정 목적

2007년 8월 21일 프랑스에서 노동·고용·구매력 촉진법(La loi n° 2007-1223 du 21 août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Loi TEPA))¹⁾이 채택되었다. TEPA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초과근로시간(heures supplémentaires)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분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것이며 둘째, 보다 완화된 조세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자본과 거대재산의 해외 유출을 저지하는 것이다. 즉 프랑스 정부는 조세제도의 완화를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제시하고 있다.

II. 노동·고용·구매력 촉진법의 주요 내용

초과근로시간의 비과세, 부동산 대출 이율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속세 경감, 학생의 임금활동에 대한 비과세, 부유세 감면, 황금낙하산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능동적 연대 수입의 도입이 TEPA법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초과근로시간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간 시각의 차이가 크다.

1. 초과근로시간의 비과세(Défiscalisation des heures supplémentaires)

TEPA법 제1조에 의하면 2007년 10월 1일부터 초과근로시간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근로자와 초과근로시간에 의존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분담금이 경감된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한 근로자당 연간 220시간 한도 내에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추가 인상 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초과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현재의 10% 대신 25%로 인상된다. 이 조치는 프랑스 국

1) 이하에서는 TEPA법으로 약칭한다.



민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증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이 대선 당시 노동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노동의 가치회복(revalorisation du travail)’ 과 ‘더 많은 노동을 통한 더 많은 수입(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 과 일치한다.

그러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비과세가 사회보험 회계에 미칠 영향과 탈세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필립 세강(Philippe Seguin)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기업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은 이른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충당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7년 20억 유로에 달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자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부동산 대출 이율에 대한 소득세 감면(Crédit d'impôt sur le revenu sur les intérêt d'emprunt immobilier)

TEPA법 제5조는 주택 구입 및 건설을 위한 대출금액의 이율에 기초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출 이율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공제된다. 단 대출금 상환을 위한 첫 5년 동안만 적용되며 공제액은 독신자의 경우 3,750유로, 부부의 경우 7,500유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500유로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각각 7,500유로와 15,000유로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한편 프랑스와 피옹(François Fillion) 정부가 최저임금(Le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SMIC)의 인상을 거부하면서 주택 대출 이율에 기초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비판이 있다.²⁾

3. 상속세의 경감

TEPA법 제8조는 일생의 근로를 통하여 마련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상속세가 면제된다.

첫째, 생존배우자;

둘째,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e de Solidarité, PACS)으로 맺어진 상대방;

셋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형제자매.

아울러 형제간 재산 상속 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세를 면할 수 있다.

첫째,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독신, 미망인 그리고 이혼 또는 별거중인 경우;

둘째,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50세 이거나 병약 또는 지병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동활동의 수행이

*** -----

2) 20 minute, N° 1302, 29 novembre 2007, p.12.

불가능한 경우;

셋째, 상속인이 상속자가 사망하기 전 5년간 꾸준히 상속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

4. 학생임금의 비과세

TEPA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이 학업과 동시에 노동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그로 인해 얻는 임금은 월 최저임금(SMIC)의 3배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여름에 단기간에 걸쳐 21세 이하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동활동에 한하여 세제가 면세되었으나 TEPA법 제정으로 노동활동의 기간에 상관 없이 만26세 이하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5. 사회 연대성 세금(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

TEPA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투자를 촉진하고 공익재단과 같은 일반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을 위한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유세에 해당하는 사회 연대성 세금(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에 세제혜택을 규정한다. 따라서 부유세 납세자가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연간 5,000유로 한도 내에서 부유세 총액의 75%를 감면 받는다. 그리고 국·사립 연구기관, 공익재단

및 장애인의 사회편입을 위한 기업과 단체 등에 기부를 한 부유세 납세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6. 황금낙하산(Parachutes dorés)⁹⁾의 범위

TEPA법은 경영진을 위한 황금낙하산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즉 사임 이후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보상금과 관련하여 기업과 경영진 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보상금이 계약에서 정해진 전 경영진의 업무 성과에 따라 지불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사임한 경영진에게 보상금이 지불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첫째, 사임 후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보상금의 지불 결정은 공표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에서 사임한 경영진에게 부과된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의 결정 또한 공표되어야 한다.

TEPA법은 앞으로 체결될 기업과 사임하는 경영진과의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사임 후 경영진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동 법 발효 시부터 18개월 이내에 TEPA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7. 능동적 연대수입(Revenu de solidarité active)

능동적 연대수입이란 단기간 내지 시간제 노동

*** -----

3) 적대적 기업인수(M&A)가 일어나면 대상기업의 현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퇴직을 당할 때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이외에 특별보너스, 스톡옵션,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종의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이 되는데 인수 기업에게는 경영진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많아지므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경영진의 해임 후 고용계약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활동을 하지만 그 임금수준이 빈곤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일정수준의 수입을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능동적 연대수입제도는 사회적 지원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리거나 실업보장으로 최저생계를 보장받다가 불안한 노동시장에 저임금고용으로 진입하자마자 사회적 지원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 Eure(Département de l'Eure)도(道)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TEPA법 제정으로 3년간 25개 도에 시험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능동적 연대수입의 시험 시행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동적 연대수입은 최저통합수당 수혜자(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와 한부모 지원부조(Allocation de Parent Isolé; API)자에게 시험 적용된다.

둘째, 각 도(道)는 능동적 연대수입 제도의 시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국가는 초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 제도의 시험 시행에 재정적으로 참여한다.

끊이지 않는다. TEPA법이 규정하는 조치들은 수요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경제학자나 조세전문가들은 경제의 재활성화는 수요와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수요는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점의 증가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하원과 상원의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디디에 미고(Didier Migaud)와 장 아르튀(Jean Arthuis)는 소비의 촉진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원칙에 의문을 제시하며, TEPA법에 의한 조세 감면은 2007년 약 15억 유로, 2008년 약 100억 유로, 2009년 약 130억 유로 그리고 2010년 약 150억 유로에 해당하는 조세재원 자체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하였다.⁴⁾ 결국 TEPA법의 실제적인 효용성 평가는 동 법이 시행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III. TEPA법을 둘러싼 논쟁

그러나 TEPA법의 효용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정 영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4) http://www.lejdd.fr/cmc/scanner/politique/200730/paquet-fiscal-reserves-de-migaud-et-arthuis_41501.html?popup (2007년 11월 27일)